

2024년 한권으로 끝내는 노동법 정오표 및 추록
(편집상의 오류는 생략하였음. 예:밑줄이나 줄간격 등)

노동법 I

| 쪽수 | 위치 | 원내용 | 수정내용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22쪽 | 날개문제 1번 | 날개문제 1번이 없음. | 1번 정답 삭제 |
| 36쪽 | [제4항] 1.에서 2번째 줄 | 기간제근로자,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등... | 기간제근로자,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등... |
| 67쪽 | 08번문제 해설 | 해설내용 [근기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]을 옆의 내용으로 교체 | <p>[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(근기법 시행령 제27조의2)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, 각종 수당, 상여금, 성과급,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(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)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·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(연장근로,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)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|
| 209쪽 | 가. 의의 | 가. 의의 - 당사자 사이에... | <p>가. 의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사자 사이에... -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(대판 2023.12.7.,2020도 15393) (※ 다만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도 인정됨) |
| 227쪽 | 2. 근기법상 규정의 없는... | 2. 근기법상 규정의 없는... | 2. 근기법상 규정이 없는... |
| 429쪽 | (1) 원칙. 판례부분 | [判:부당해고기간이...] | [判:부당한 갱신거절기간이...] |

노동법 II

| 쪽수 | 위치 | 원내용 | 수정내용 |
|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01쪽 | <조문에 시행령까지 추가해 주세요> | | |
| | 노동조합법 | 시행령 | |
| | 제25조(회계감사)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,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,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 | 제11조의7(회계감사원 등) ①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 (이하 이 조에서 “회계감사원”이라 한다)은 재무·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.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(이하 “회계법인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. 1.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.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.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.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| |
| 123쪽 | <2.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개 조문에 시행령까지 추가해 주세요> | | |
| | 노동조합법 | 시행령 | |
| | 제26조(운영상황의 공개)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| 제11조의8(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)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6조에 따른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(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) 이내에 조합원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. 제11조의9(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(이하 “공시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조의8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1조의8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. ③ 노동조합의 산하조직(노동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)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·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| |
| 343쪽 | 맨 밑의 박스 1. 불법행위행위에 대한... | 1. 불법행위행위에 대한... | 1. 불법쟁의행위에 대한... |
| 347쪽 | III. 징계책임 바로 밑 | - 법 한 쟁의행위를... | - 위법 한 쟁의행위를... |